웅지세무대학교 산 학 협 력 단	산 학 협 력 단 법 인 정 관	문서번호	8-1-01(N)-0
		제정일자	05.04.04
		최근개정	14.05.01
		주관부서	산학협력단
			-
		홈페이지공개	공 개

웅지세무대학교 산학협력단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학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의한 웅지세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05.01.>

제2조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웅지세무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이라 한다. <개정 2014.05.01.>

제3조(사무소 소재지)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본 대학 안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군내에 부설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) ① 산학협력단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
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권리에 관한 업무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6.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③산학협력단장은 제 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의 집행을 총괄한다.

제5조(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)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부속기관 : 기술지원센터, 산학연컨소시엄사업단
2. 기타 : 재정지원사업
3.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 <개정 2014.05.01.>

제2장 조직

제6조(이사)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.
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.

제7조(단장)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4.05.01.>
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.
④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후임단장 선임 시까지 직무를 대행하며,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4.05.01.>

제8조(직원 및 연구원)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
② 행정부서에는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4.05.01.>
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. <개정 2014.05.01.>
④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임용기간, 보수,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.
⑤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. <개정 2014.05.01.>

제3장 재산 및 회계

제10조(재산의 종류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.
1. 출연재산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

제11조(운영재원)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.
<개정 2014.05.01.>
1. 기본재산의 운용수익
2. 출연금·기부금·보조금

3. 사업수익
4. 차입금

제12조(재무관리의 제한)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05.01.>

1. 기본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2. 예산 외 채무의 부담
3. 채권의 포기

제13조(회계연도)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4장 보칙

제14조(비밀유지의무) 본 정관에서 규정한 재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정관의 변경)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05.01.>

제16조(해산)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.
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. <개정 2014.05.01.>
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.
④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4.05.01.>

제17조(공고)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.

1.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
2.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
3.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

② 이 법인의 공고방법은 본 대학 인터넷 게시판 또는 주요 일간지로 한다.

부 칙 <1판-제정/시행 2005.04.04.>

제1조 본 정관의 효력발생시기는 관할등기소에서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한다.

제2조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·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.

부 칙 <2판-개정/시행 2014.05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정관의 개정) ① 대학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, 제2조의 "웅지세무대학"을 "웅지세무대학교"로 개정한다.

② 기관장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, 제7조제1항, 제4항, 제8조제2항, 제3항, 제9조2항, 제12조제3호, 제15조, 제16조 제2항, 제4항의 "학장"에서 "총장"으로 개정한다.

③ 제11조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"운영경비"에서 "운영재원"으로 개정한다.